

##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일 시 : 2018. 12. 19.(수) 14:00
- 장 소 : 대학본관 4층 접견실
- 참석자 : 한남희, 권수태, 김갑룡, 이용노, 한상선, 박찬우

### ※ 회의안건

- I. 기금운용지침(안) 심의
- II.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부위원장: 성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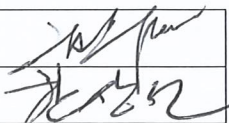
간사: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위원장: 성원되었으므로 개최를 선언합니다. 제1호안건은 ‘기금운용지침(안)’이며, 제2호안건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사립학교법,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26일 ‘재무 및 회계규정’ 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목적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관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재무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를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이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간사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간사: (회의자료 설명)

부위원장: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간 서 명	이호인		한남희	한남희	권수태	
	김갑룡	김갑룡	이용노	이용노	한상선	
	박찬우	박찬우				

부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안건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가지입니다. 제1호안건은 ‘기금운용지침(안)’ 심의,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입니다. 먼저 제1호안건 ‘기금운용지침(안)’ 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제1호안건: 기금운용지침(안) 심의

부위원장: 제1호안건 ‘기금운용지침(안)’ 에 대해서 간사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간사: (회의자료 설명)

부위원장: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1페이지의 ‘투자관리 지침 개요’ 를 보시면 ‘본 투자관리 지침은 사립 대학 적립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관리 지침은 기금운용지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간사: 네. 기금운용지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의미가 일치되도록 ‘기금운용지침’ 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 다음으로 7페이지 ‘기금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을 보시면 기금 자산의 수탁자는 은행을 의미하는지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사: 전주대학교 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라는 문구가 해석상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 그렇다면 ‘기금운용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기금운용담당자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인지, 이와 관계없이 기금운용담당자가 책임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명시가 없어서 의미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구를 보더라도 ‘직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기금운용담당자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간 서 명	이호인		한남희	한남희	권수태	권수태
	김갑룡	김갑룡	이용노	이용노	한상선	한상선
	박찬우	박찬우				

받아들일 수 있어서 표현이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먼저 ‘4.1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를 보시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재무 지원실은 기금운용심의회 하위조직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기금이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할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입찰형식으로 각 은행으로부터 이자율을 받습니다. 이자율을 비교 후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과 주 거래인 우리은행을 고려하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결재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 만일 기금 자산의 수탁자가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은행이 기금을 수탁받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준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금 자산의 수탁자가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기금을 예치하였는데, 당시에 투자성이 더 높은 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직원에게 책임추궁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기금운용담당자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것입니다. 우선, ‘6.1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 을 보시면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3 투자대상별 투자비율 및 한도’ 를 보시겠습니다. 유동성자금, 장기성자금 모두 투자대상별로 투자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지침서에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을 정해두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기존에 심의 및 의결을 받은 투자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용과 비중이 변경될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2 기금운용 조직과 역할’ 의 ‘가. 기금운용심의회’ 에 나열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항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지침서의 제·개정 사항’ 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의결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7. 기금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듯 합니다. 따라서

간 서 명	이호인		한남희	김갑룡	권수태	김갑룡
	김갑룡	김갑룡	이용노	이용노	한상선	한상선
	박찬우	박찬우				



‘직원은 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 및 의결사항들을 준수한다’ 라는 표현을 적시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7. 기금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은 보완하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기금운용지침(안)’ 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동의합니다.

전원: 제청합니다.

부위원장: 가하면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전원: 예.

부위원장: ‘기금운용지침(안)’ 은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안건: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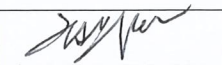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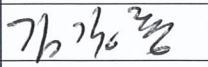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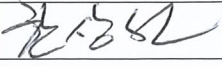

부위원장: 제2호안건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간사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간사: (회의자료 설명)

김갑룡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장기성자금에는 방카슈랑스가 있는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위험이 없는 것인가요?

간사: 네. 방카슈랑스의 경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이자 또한 최소 1.5%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개념과 경계가 모호해서 검토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보험자를 총장님 혹은 교직원으로 하더라도 수익자는 전주대학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학진흥재단의 Q&A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성자금을 방카슈랑스로 결정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상선 위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투자대상과 투자비율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는 실무선에서 정해진 범위안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간 서 명	이호인		한남희	권수태	권수태	
	김갑룡		이용노	이영민	한상선	
	박찬우					

간사: 네. 기금의 만기가 불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연 계획에 맞게 적립을 하고 인출을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위원회를 열 수 없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심의 및 의결을 받은 투자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용과 비중이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노 위원: 기금운용지침은 일 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 것인가요?

간사: 기금운용지침의 경우에는 정기적이 아니라 수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선 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 열리나요?

간사: 연 계획으로 보자면 정기적으로 총 3번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예산, 추경에서 인출 변동이 있을 때, 결산 보고 총 3번 열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 기금운용부분은 예·결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간사: 네 그렇습니다. 교비회계에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가 있는데, 비등록금회계 안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 예산에 기금운용부분이 반영이 될 때 기금운용심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간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추가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동의합니다.

전원: 제청합니다.

부위원장: 가하면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전원: 예.

간 서 명	이호인		한남희	권수태	권수태	한상선
	김갑룡	김갑룡	이용노	이용노	한상선	한상선
	박찬우	박찬우				

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은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폐회 해도 되겠습니까? 폐회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동의합니다.

전원: 제청합니다.

부위원장: 가하면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전원: 예.

부위원장: 기금운용심의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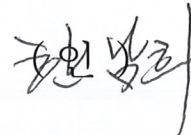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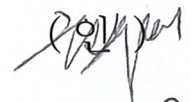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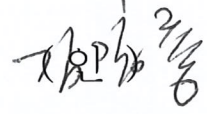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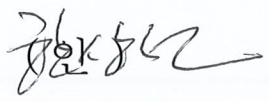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간 서 명	이호인		한남희	한부원	권수태	권수태
	김갑룡	김갑룡	이용노	이용노	한상선	한상선
	박찬우	박찬우				

2018. 12. 19

위의 사실을 확인함.

## 전주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이 호 인	(인)
부위원장	한 남 희	
위원	권 수 태	
위원	김 갑 룡	
위원	이 용 노	(인/용노)
위원	한 상 선	
위원	박 찬 우	